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의 증명자료 규정 및
공동부령 위임 등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1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의 증명자료 규정(안 제124조제1항)	2
2. 공동부령 위임 및 측정방법 명시(안 제124조제2항)	6
※ 참고자료	1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10
2.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확인 절차	1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25일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Ⅲ. 검토의견

1.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의 증명자료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를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로 변경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명자료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u>그 증명자료를</u>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u>결과보고서를</u> ----- -----.
<신 설>	1. <u>석면농도측정 결과표</u>
<신 설>	2. <u>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u>
<신 설>	3. <u>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u> <u>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u>

<신 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

나. 검토의견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흡입할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석면에 대한 조치를 별도의 절²⁾로 두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현행법 제124조제1항은³⁾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

1)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중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3)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⁴⁾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석면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적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측정위치, 측정시간, 측정자 등이 포함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⁵⁾하도록 하고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혼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1] 별지 제80호(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81호(석면농도측정 결과표) p.10

개정안에서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측정 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및 작업장에서 사용된 측정장비의 사진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서, 이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농도의 측정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측정기술의 변화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보완될 수 있어 측정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증명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설하려는 사항이 이미 시행규칙·별지서식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공동부령 위임 및 측정방법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측정방법과 함께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석면농도를 실효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u>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후단 신설>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② ----- ----- <u>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u> 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흘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4조제2항⁶⁾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공기 중 석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

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⁷⁾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흘날린 후 측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⁸⁾하도록

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흘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실제 측정하는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이 정해지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구조인바, 실제 측정기준과 이를 확인·관리하는 기준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음⁹⁾¹⁰⁾.

이에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측정방법·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그 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고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10) [참고 2]: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확인 절차(고용노동부 자료) p.12

리·감독에 관한 양 부처의 전문성을 함께 반영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제124조제2항의 측정은 작업 완료 후 작업장 내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여 근로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자 자격도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소속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단독 부령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관련 규정 개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어 공동부령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는 달성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측정장비’의 경우 측정방법의 일부로서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율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후단 신설과 관련하여 “침전된 분진을 흘날린 후 측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효적인 방법”의 판단기준이 법문상 특정되지 않아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인	석면해체·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제거업
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2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확인 절차

이행 절차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주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기한)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첨부서류) 공사계약서,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시행규칙 제181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1항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체) 석면해체·제거업자 ○(방법)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 작업	○법 제123조(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1항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③	석면농도 측정 및 결과표 작성 ○(주체) 석면농도측정기관 은 석면농도 측정 후 결과표를 작성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제출 ○(농도기준) 0.01개/1cm ³ ○(제출서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참고> * 석면농도측정기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뢰를 받아 작업장 내 석면농도를 측정(시료채취, 분석 등)하고 그 결과표를 작성하는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 전반을 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시행규칙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시행규칙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1항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주체) 석면해체·제거업자 는 석면농도측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확인 * 기준 초과 : 청소 등 조치 후 농도 측정 재의뢰 * 기준 이하 : 지방노동관서 제출 ○(확인서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1항 제2호 *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확인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4항 * 석면농도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해체 중지 등 요구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증명자료 제출 ○(주체) 석면해체·제거업자 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제출서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제81호)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및 제81호 서식	